

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10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규칙에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조례로 변경(안 제9조, 제9조의3, 제9조의4)
- 이용료 징수기준 명시(안 제8조)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코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8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이용료를 “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“면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하는 등 이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였고,
- 안 제9조, 제9조의3, 제9조의4에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 등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